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무조정실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 및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7년 3월 31일까지로 정하는 한편, 국무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제조정실 1개 과 및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국제개발협력본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개발협력지원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9. 4. ~ 9.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7”을 “18”로, 출입국관리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34”를 “33”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5 제1호4)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표 제2호3)의 평가기간란 중 “2024년 9월 30일”을 각각 “2025년 9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영 시행 당

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2명)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출입국관리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행정서기 또는 세무서기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세무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세무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

[별표 2]

조세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122
일반직 계	122
고위공무원단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상임심판관)	8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
서기관	16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7
행정사무관	57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세무주사	9
행정주사·세무주사 또는 관세주사	2
행정주사보 또는 세무주사보	5
행정서기 또는 세무서기	8
행정서기보 또는 세무서기보	3
운전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2

[별표 2의2]

조세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122
일반직 계	122
고위공무원단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상임심판관)	8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
서기관	16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
행정사무관	56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세무주사	9
행정주사·세무주사 또는 관세주사	2
행정주사·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또는 세무주사보	4
행정서기 또는 세무서기	9
행정서기보 또는 세무서기보	2
운전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2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의2]

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	<u>17</u> .	<u>18</u> .	+1
출입국관리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34</u>	<u>33</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1